

1. 개정이유

「방송법」이 개정(법률 제20059호, 2024. 1. 23., 7. 24. 시행)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신고서 양식과 필요 서류 목록을 구체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 양식 추가(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)
- 나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 추가(안 제8조 제7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(흡수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을 의미하고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법인을 의미한다)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에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[]종합유선방송사업자
[]위성방송사업자**

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15일
신고인	법인명(상호)			법인등록번호	
		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		생년월일	
	소재지 (주된 사무소)	(전화번호 :)			
피합병인	법인명(상호)			법인등록번호	
		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		생년월일	
	소재지 (주된 사무소)	(전화번호 :)			
합병 내용					

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.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의 정관 1부 3.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4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신고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변경허가 등) ① ~ ⑥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변경허가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(흡수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을 의미하고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법인을 의미한다)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에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⑦ ~ ⑨ (생략) <u><신 설></u>	⑧ ~ ⑩ (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) 별지 제24호의2서식